



2012 사회적경제 정책과제

(가칭)한국협동조합·사회적경제통합연대회의

※ (가칭)한국협동조합·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기존의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통합을 결의하고 2012년 11월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는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나눔의집협의회, 대학생협연합회, 사회연대은행, 사회투자지원재단,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신나는문화학교교사협회, 신나는조합,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주)온케어(도우누리), 청소대안기업연합회,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대안기업연합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의료생협연합회, 한국주거복지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함께일하는재단 정책연구원,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총32개 단체)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두레생협연합회, 사회투자지원재단,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 신나는 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북사회적경제네트워크, 청주우진교통,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한국대안기업연합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icoop생협연구소(총 20개 단체)

사 회 적 경 제 정 책 과 제

과제1 : 민관 거버넌스 구축

- 대통령 직속 사회경제위원회 설치

과제2 :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중인식의 증진 및 교육홍보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사회적 경제>영역 추가 및 확대
-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주체의 역량강화
- 일반시민, 수요계층을 위한 교육홍보매체 개발, 보급
- 사회적 경제주체의 대국민 인식증진활동에 대한 정부지원

과제3 : 사회적경제 발전기반조성

- 제도개선과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조성
- 사회적 경제 친화적 공공시장의 조성

과제4 : 협동·사회적경제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지원

- 일차의료 강화, 주치의제도 도입
- 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보육협동조합 확대
-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임대주택협동조합 보급
- 돌봄서비스 협동조합·사회적기업 활성화
- 협동조합을 통한 서민자조금융 활성화

과제5 :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 협동조합과 정부간의 관계 재정립
- 협동조합 관계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부 간섭·개입 중단
- 지원은 아되 간섭은 하지 않는 대원칙 필요

과제 1: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제안배경

- 고용노동부 중심의 육성정책으로부터 부처간 통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책 전환의 필요성 제기됨.
 - － 고용노동부는 지난 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에 기여했고 자신의 예산권한을 내놓으므로써 다른 부처와 지자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정 정도 성공했음
 - － 그러나 현행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체제만으로는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협동조합, 비영리 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 전체에 대한 지원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 영국의 경우에도 통상산업부 내에 사회적기업과(social enterprise unit)가 사회적기업 정책을 담당했으나 다양한 부처와 일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상이 관할하는 내각부 내의 제3섹터청(Office of Third Sector, 현재 시민사회청 Office of Civil Society으로 개칭)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전환.

□ 세부 정책과제: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 위원회 설치

- 대통령 산하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설립하고 사회적 목적성을 갖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다양한 활동을 범부처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범부처적, 지자체와 중앙정부를 아우르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능별로 구분된 부처를 넘어서는 조직이 필요하며, 정책조율기능만을 갖는 국무총리실에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힘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움. 이런 점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함.
 - － 위원회는 단순한 대통령 자문기구의 역할을 넘어서서 중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위상을 가져야 함.

과제 2: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중인식의 증진 및 교육홍보

□ 제안배경

-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계기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차원(개인 또는 소규모 집단, 기존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주체, 지역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관한 교육, 인식증진 프로그램이 기획, 추진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윤리적 소비’ 등 사회적 경제의 주요 내용에 관한 논의와 인식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생산, 소비, 노동을 구성하는 다른 방식, 양극화와 사회불안을 양산하는 시장만능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사회적 실천은 취약한 것이 현실임.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계기로 촉발된 이 같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모색의 흐름이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의 확산과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중요한 핵심적 과제임.
-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와 인식확대를 위한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 청년 세대에 대한 교육홍보정책과 실제 수요자에 대한 맞춤 프로그램(기본교육, 창업 및 경영지원 등)이 있어야 할 것임.

□ 세부 정책과제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사회적 경제> 영역 추가 및 확대
 1. 유치원, 초등학교 : 가치관 형성교육
 - ‘협동’, ‘자조’, ‘연대’, ‘배려’ 등 중요한 가치관 형성
 2. 중·고등학교 시기 : 가치관 형성과 이해교육 및 진로교육
 - ‘협동’, ‘자조’, ‘연대’, ‘배려’ 등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가 기초하고 있는 가치관 형성
 - 시장경제, 계획경제, 협동사회경제 등 경제체제에 대한 균형 잡힌 교육과 비판적 관점 형성
 -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장점 및 사례를 이해하고 진학, 진로지도와 연계
 3. 구체적인 정책 과제
 - 교육과정의 개편과 국정/검정/인정 교과서의 개발 : 사회적 경제 분야
 - 관련 교보재(교과서, 보조교재, 시청각자료 등), 실험실습 프로그램 개발
 - 교사 연수 등 지도자를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주체의 역량강화
 - ： 교육, 연수, 훈련, 창업 및 경영지원
 - 1.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체계의 정비
 - － <사회경제위원회>가 사회적 경제 분야 정책의 총괄 조정기능 수행
 - －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재단, 연구소 등 지원기관 간 유기적인 관계 및 지원체계 구축
 - 2. 교육, 훈련,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정책 수립
 - － 사회적 경제 주체 대상의 교육, 훈련, 창업 및 경영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 －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지원조직 참여

- 일반시민, 수요계층을 위한 교육홍보매체 개발, 보급
 - ： 단행본, 시청각자료, 매뉴얼 등
 - 1. 일반 시민대상 교육홍보매체 개발, 보급
 - －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이해교육을 위한 일반교재 개발 : 분야별, 대상별 교재 개발
 - － 형식 : 팸플렛, 단행본, 매뉴얼, 시청각자료
 - － 보급 : 각급 학교, 공공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보급, 확산
 - 2. 직접 수요자를 위한 교육홍보매체 개발, 보급
 - －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 법규 해설자료
 - －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매뉴얼

- 사회적 경제주체의 대국민 인식증진활동에 대한 정부지원
 - 1. 사회적 기업의 날, 세계 협동조합의 날 행사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
 - － 민간에 부족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 2. 대국민 인식증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활동
 - － 대국민 홍보매체(홍보영상, 대중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등) 제작 및 보급

과제 3: 사회적경제 발전기반조성

세부정책과제1: 제도개선과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조성

□ 제안배경

- 사회적기업이 공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공유재산등의 무상사용이나 수익계약 대상으로 법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회적기업은 민법이나 상법에 근거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음.
- 이는 사회적 목적의 공익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통합형의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직접적인 지원 외에 공간적 지원도 필요하나 현행 제도불비로 인하여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함
- 직접지원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강조되고 있으나 이는 지원체계의 다양화와 지원 내용의 양적 증가를 의미하기 보다는 산업연계를 비롯하여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클러스터 구축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임

□ 주요내용 : 관련 법 개정과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구축

- 사회적기업의 법적 근거를 민법과 상법에만 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의 비중에 따라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하도록 함
- 국유재산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허가 조항을 삽입함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였으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기존의 중소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창업내용으로 할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서비스, 사회혁신 등 사회적기업의 주요 유형이 포함되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의 산업연계를 위한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구축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의 산업단지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경제 집적지를 조성함

과제 3: 사회적경제 발전기반조성

세부정책과제 2: 사회적 경제 친화적 공공시장의 조성

□ 제안배경

- 현재의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공구매 우선 제도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등 기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종속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부문을 위한 특화된 기제(진입, 계약 등)가 유효하게 작동하는 데 제한적임.
- 사회적책임조달 관점 및 최적가치낙찰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공공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사회적 경제 부문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사회적 경제 부문을 위한 ‘사회책임조달특별법’의 제정
 - ◎ 최적가치낙찰제도의 도입
- ‘사회적 경제 부문을 위한 공공시장 중개 센터’의 설치
- 공공서비스의 혁신 - 사회적기업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 30%까지 확대
 - ◎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개발과 판로 지원
 - △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프로젝트 개발비: 매년 1,000억 원
 - △ 간병·요양 전문 사회적기업의 개발: 약 250여개
 - △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및 주민 참여 확장을 위해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설립: 약 250여개 설립
 - △ 정부 바우처 사업 공급체의 총 50%를 사회적기업으로 개발
 - ◎ 신규 복지, 문화, 교육 등의 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 시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기회 부여
 - ◎ 공기업의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을 장려

과제 4: 협동·사회적경제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지원

세부정책과제1 : 일차 의료 강화, 주치의제도 도입

□ 제안배경

-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지역사회의 일차의료 영역에서 건강문제의 80-90%를 해결하고 있다. 일차의료의 수준이 높은 국가의 국민은 그렇지 않은 국가의 국민보다 자국 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합리적이고 형평성이 높은 건강관리가 가능하여 건강수준도 우수하다.
-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96년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실시 계획이 발표된 바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 결여와 제공자들의 반발, 국민적 동의획득 실패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의료생협에서는 일차의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전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1994년 안성의료생협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전역에서 주치의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 주요내용

- **일차의료특별법 제정**
 - － 모든 국민은 주치의 지정-이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일차의료특별법을 제정한다. 이법에는 표준 일차의료기관 (마을 건강센터) 설치와 운영, 주치의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일차의료 인력 양성, 일차의료 교육 혁신, 의뢰-회송 체계 확립, 일차의료 정보체계 - 표준 웹 프로그램 실행 방안등을 담는다.
- **일차의료 강화, 주치의사업 지원**
 - －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 소정의 교육을 받은 개원의, 보건소등의 표준일차의료기관 모델을 개발하고, 자발적인 참여 조직부터 재정, 프로그램등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세부정책과제2 : 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보육협동조합 확대

□ 제안배경

- 전통적 가족구조의 해체 후 가족이 맡았던 보육을 여성이 전담하게 되면서 여성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음. 이에 가구소득이나 계층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 할 필요성이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민간보육시설의 급증은 상호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안정, 취약한 행정력으로 인한 지도감독의 소홀 속에 어린이학대, 급식부정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보육시설 유형별 현황 추이 (단위: 개소, %)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보육	가정보육	직장보육
				소계	법인의	개인			
2010	38,021	2,034	1,468	14,677	888	13,789	74	19.360	401
	100.0	5.3	3.9	38.6	2.3	36.3	0.2	50.9	1.1

※ 자료 : 백선희,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 이에 부모와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 보육에 대한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12년 8월 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을 필두로 육군사관학교내 어린이집, 북부여성발전센터내 어린이집 등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임

□ 주요내용

- 직장보육시설의 보육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 컨설팅 및 지원
 -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컨설팅 및 상담창구 개설
- 임대아파트, 공단지역, 상가지역에 공동보육시설 우선 설치 지원
 - 영세소기업 중심의 공단지역에 노사(부모)-지역사회가 공동운영하는 보육시설 설립
 -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운영하는 보육협동조합에 유휴공간 무상 임대 및 시설비 지원
 - 상인들의 보육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유휴상가 무상임대 및 시설비 지원

세부정책과제3 :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임대주택협동조합 보급

□ 제안배경

- 우리나라의 주택공급방식은 오랫동안 대규모 고층아파트 중심의 파이낸싱 방식으로 이루어져온 바 최근의 부동산 불황을 계기로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이 확산되고 있음
- 또 개발사와 주택조합을 중심으로 한 현행 재개발방식은 세입자뿐 아니라 기존 부동산 소유자들조차 약 70%가 추가부담 때문에 입주할 못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쪽방, 고시원을 전전하는 주거빈곤가구도 확대되고 있음
- 최근에는 대학생 주거문제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47만명) 중 지방학생은 약 14만명(30%)인데 이들 중 기숙사 거주자는 10~20%로 매우 낮으며 대개가 자취나 하숙을 하기 때문에 월세, 하숙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음
- 따라서 중소규모 적정가격의 주택과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시급하며, 주택 수요자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고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모델을 도입해야 함

□ 주요내용

- 협동조합형 주택 공급비율의 목표치 설정
 - －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임대주택공급방식의 다양화(신개념 임대유형 개발 공급, 다가구 매입 신축, 장기 안심주택 도입, 공공원룸주택, 희망하우징)
- 주택협동조합의 홍보·설립·운영·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상담 시스템 마련
 - － 주택협동조합 연합회가 설립되어 자생적인 지원활동을 하기 전까지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조합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스웨덴의 HSB 주택협동조합, 미국의 Burlington 의 Champlain Housing Trust의 협동조합 주택, 독일 튀빙겐시 라멘플랜 등)
- 취약계층 임대협동조합주택의 공급
 - －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학생 임대협동조합주택, 노숙자 임대협동조합주택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

세부정책과제5 : 돌봄서비스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활성화

□ 제안배경

- 사회의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가사관리, 아동보육, 산후관리 등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책임과 분담의 필요성을 더욱 제고시키고 있음. 이러한 서비스는 소득에 상관없이 '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유료로 공급되고 있어 빈부격차에 따라 사각지대가 널리 존재함
- 가사간병, 노인돌봄, 산모신생아돌봄 등 정부의 바우처제도는 수급자 혹은 최저생계비 180% 등 엄격한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어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공익적 전달체계의 하나인 사회적기업 역시 낮은 바우처단가, 시장요금≒종사자 인건비라는 시장구조로 인해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음
- 따라서 돌봄서비스 바우처제도의 대폭 확대와,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등 공익적 전달체계의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 공급이 절실함

□ 주요내용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까지 돌봄바우처 확대와 소득공제
- 한부모가정, 만성 · 중증재가질환자, 조손가구, 쉼터 거주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돌봄바우처제도 도입
- 바우처기관 선정, 요양시설 위탁 및 선정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 돌봄서비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연합체에 대한 직업훈련시설 인정

세부정책과제6 : 협동조합을 통한 서민자조금융 활성화

□ 제안배경

- 현재 서민금융은 금융 약탈자들의 고리대금업 먹이감으로 전락해 서민들을 채무노예로 만들고 있음. 때문에 서민들 스스로 연대와 연합의 힘으로 상부상조하는 신용협동조합운동과 공제조합 운동이 절실히 필요함.
- 그럼에도 금융감독 당국은 오히려 고리대금업자들을 지원하고 있고, 진정한 서민금융조직인 신협과 공제조합을 불허하고 있음.
- 신협과 공제조합의 설립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결사의 자유임에도 금융위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서민들을 채무노예로 전락시키는 반국가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주요내용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신용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
 - － 조합원의 출자금 한도 안에서의 대출사업은 신협의 원초적 사업이며 1960년대 고리채를 없애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바로 신협운동이었음.
 - － 현재의 신협법은 북한과 똑같은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관제법이므로 개정되어야 함
- 협동조합기본법에 공제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 및 조합원들간 자조적인 상호부조 사업의 허용

과제 5: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 제안배경

-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조직으로 정부나 다른 조직과의 관계에 있어 자치와 자율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함.
- 자치와 자율의 원칙은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채택한 협동조합 7원칙 중의 하나로서 협동조합이 정부 또는 외부 조직과 협력하거나 외부의 자본조달을 함에 있어서도 조합원 스스로의 민주적 관리와 통제를 할 수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이는 협동조합에 있어 생명과도 같은 것임.
- 하지만 기존의 한국 협동조합의 현실은 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하여 협동조합이 조합원에 의해 온전히 관리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하고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폐단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정에서도 협동조합의 자치, 자립의 보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기본법에 의해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 만이 아니라 기존의 협동조합과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합원 소유, 관리 사업체로서의 협동조합의 성격,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임.

□ 세부 정책과제

- 협동조합과 정부 간의 관계 재정립
 -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자치와 자립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하며 이런 인식은 협동조합, 정부 모두에게 필요함.
 - 정부와 협동조합의 협력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을 수단화하거나 하위 기관화하여 정책 실행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자율과 자립에 기초한 협동조합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므로 정부와 협동조합 간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함.
- 협동조합 관계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부 간섭, 개입 중단
 - 협동조합 관련 법은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의 범위를 넘어서서 조합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협동조합의 운영, 관리 자체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심지어는 정부 퇴직관료를 협동조합의 임직원으로 내려보내는 구태도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대원칙 필요
 -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설립,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본과 인적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경영, 운영상의 현실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 정부 또는 지자체의 공적 자원을 협동조합의 육성, 발전을 위해 지원함에 있어서도 ‘지원은 하지만 간섭을 하지 않는’ 대원칙 하에서 협동조합과 정부(또는 지자체) 간 수평적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발전과 정부의 역할 정립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임.

(가칭)한국협동조합·사회적경제통합연대회의

※ (가칭)한국협동조합·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기존의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통합을 결의하고 2012년 11월 발족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는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나눔의집협의회, 대학생협연합회, 사회연대은행, 사회투자지원재단,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신나는문화학교교사협회, 신나는조합,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주)온케어(도우누리), 청소대안기업연합회,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대안기업연합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의료생협연합회, 한국주거복지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함께일하는재단 정책연구원,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총32개 단체)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두레생협연합회, 사회투자지원재단,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 신나는 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북사회적경제네트워크, 청주우진교통,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한국대안기업연합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icoop생협연구소(총 20개 단체)

※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의 간사단체는 사회투자지원재단이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간사단체도 사회투자지원재단입니다. (가칭)협동조합·사회적경제통합연대회의는 현재 양 연대회의에서 추천받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연락과 실무지원은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간사단체인 사회투자지원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사회투자지원재단 02-322-7020

(협동조합연대회의 간사 김동언 sherpak@naver.com)